

201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7년도 대구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3일

대구광역시장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채용 구분	채용 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 시간
			계	남	여		
계		9개 분야	144	133	11		
공개 경쟁 채용	지방소방사	일반소방	61	58	3	필수(3) : 국어,한국사,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중 2과목	5과목 (100분)
경력 경쟁 채용	지방소방위	항공조종	2	2		필기시험 면제(실기시험 대체)	-
	지방소방교	구급상황관리	1		1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3과목 (60분)
	지방소방사		2	2			
	지방소방사	구조	15	15			
	지방소방사	구급	40	33	7		
	지방소방사	운전	14	14			
	지방소방사	건축	4	4			
	지방소방사	화학	3	3			
	지방소방사	가스	2	2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2

시험방법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단, 항공조종분야는 필기시험 미실시)

1) 시험과목 : 공개경쟁 5과목, 경력경쟁 3과목 ※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공개경쟁채용 (5과목)	경력경쟁채용 (3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지방소방사 “영어”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2)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 100분(10:00~11:40), 경력경쟁채용 60분(10:00~11:00)

3)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4) 선택과목 출제범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5)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단,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일반소방(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조종, 건축, 화학, 가스분야는 3배수 범위)

※ 2배수(3배수)를 초과하여 채용분야별 동점자(합격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6)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 2 [별표 7] **[붙임2]**

7)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조종분야는** 필기시험을 **실기시험**으로 대체하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실기시험을 지원합니다.(세부일정 등 별도 공고)

가) 실기시험 방법 : 운항조종능력(시뮬레이션)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평가

나) 사전비행 실시 : '17.4.17.(월) ~ 4.18.(화) 희망자에 한함(평가 미반영, 사전비행 지정시간 집결)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단, 구급상황관리분야는 체력시험 미 실시)

1)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약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앞아랫몸으로 굽히기 (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체자리 뛰기 (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이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2)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의거 6개 종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각 종목별 측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함 **[붙임3]**

3) 도핑테스트

가)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구급상황관리분야는 체력시험을 미 실시합니다.(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9조제1항)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서류전형 및 적(인)성 검사

- 1)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일 까지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수수료 응시자 개별 납부)
 - 가) 합격자 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 상태에 적합한 자 모두를 합격자로 합니다.(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함)**[붙임6]**
 - ※ 항공조종분야의 경우 「항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서를 서류전형 시 제출(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 1년 이내 발행)
 -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신체검사 일정 및 장소(지정병원), 경력경쟁채용분야 제출서류 등은 제2차 시험(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려드립니다.
- 2) 서류전형은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 적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실시
 - 가)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3) 적(인)성검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적(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1) 면접시험 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2)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함
- 3) 합격자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 ※ 항공조종분야는 면접시험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지원합니다.(세부일정 등 별도 공고)

마. 최종합격자 결정

- 1)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및 면접시험 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가) **항공조종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체력시험성적 **1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나) **구급상황관리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퍼센트**, 면접시험성적 **10퍼센트**의 **합 85퍼센트**의 비율을 **100점으로 환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1)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3.7)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2) 경력경쟁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다만, 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은 응시 가능

나. 거주지 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경쟁	일반소방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구급상황관리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구급, 운전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항공조종, 구조, 건축, 화학, 가스	거주지 제한 없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거주지 요건 확인은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시 험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경력경쟁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7. 12. 31.

※ 단, 경력경쟁채용 중 항공조종분야는 23세 이상 45세 이하(1971. 1. 1 ~ 1994.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응시가능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1)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항공조종분야는 해당 없음(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5항)

2) 경력경쟁채용

선발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계급	인원
항공조종	<p>「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 「항공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자 ○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인 자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p>※ 비행시간은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p>	지방소방위	2명

선발분야		응시 자격 및 경력 제한	계급	인원
구 조	경력	<p>군 특수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p> <p>① 군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p> <p>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p> <p>③ 기타 특수전부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와 「특수전 임무 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p>	지 방 소방사	15명
		<p>자격·경력</p> <p>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인정범위 : [붙임7] 구급분야 경력인정범위에 한함</p>	지 방 소방사	40명
운 전	자격·경력	<p>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 실무 경력이 있는 자</p> <p>※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p> <p>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p>	지 방 소방사	14명
구 상 관	경력	<p>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4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5급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9-133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p>	지 방 소방교	1명
		<p>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119-1339 업무통합으로 이관되어 최종시험예정일까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 계속 근무중인 구급상황관리사</p>	지 방 소방사	2명

선발분야		응시자격	계급	인원
건축	자격·경력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건축 관련 자격증 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건축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건축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건축 관련 실무경력 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지방소방사	4명
	경력	군 화학부대 3년 이상 근무한 자(화학병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화학	자격·경력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화학 관련 자격증 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화학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화학 관련 자격증 - 기술사 : 화공 - 기능장 : 위험물 - 기사 :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 화학 관련 실무경력 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지방소방사	3명
	경력	군 화학부대 3년 이상 근무한 자(화학병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가스	자격·경력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에 의한 가스 관련 자격증 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가스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가스 관련 자격증 : 가스 기능사 이상 ○ 가스 관련 실무경력 이란 경력증명서에서 당해분야 근무한 실무 경력이 인정되는 자	지방소방사	2명

3)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제출 시 유의사항

- 가)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나)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항공조종, 구조, 화학(군경력자) 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해당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및 자격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격 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바. 각종 증명사항 기준일

- 1) 자동차운전면허증 : **응시원서 접수일**(면접시험 최종시험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2) 가산점 관련 자격증(**공개경쟁/일반소방 남·여**)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3) **경력경쟁채용분야** 자격(면허) 및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 접수 (최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2017.2.20.(월) ~ 2.24.(금) (09:00~21:00) ※최소마감일 : 3.2.(목) 21:00 (단, 토·일요일·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음)	제1차 필기 시험 실기 시험	3.17.(금)	4. 8.(토)	4.25.(화)
			4.19.(수) ~ 4.20.(목) ※ 단, 항공조종분야에 한함	
	제2차 체력시험	4.25.(화)	5.13.(토) ~ 5.14.(일)	5.19.(금)
	제3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서류전형)	5.19.(금)	5.22.(월) ~ 5.24.(수)	6. 9.(금)
			5.30.(화) ~ 5.31.(수)	
제4차 면접시험	6. 9.(금)	6.20.(화) ~ 6.23.(금) ※ 단, 항공조종분야는 6.14.(수)~6.16.(금)	7. 4.(화)	

※ 시험장소시간 및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청 및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안내할 예정이오니 단계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5

접수(인터넷 원서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1)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연락처 : ☎1522-0660)

나. 접수시간

- 1) 원서접수(취소)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취소)할 수 있습니다.(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1) 응시수수료(소방장이상 : 7,000원, 소방교·소방사 : 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수급자(보호대상자)조회하여 개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라. 사진등록

-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cm×4.5cm입니다.
- 2)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 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1)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2) 원서접수·취소기간 내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인터넷 취소만 가능)
- 3)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 4) 사진 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5)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당해 필기시험 전일 기준)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바' 참고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 마다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4)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3)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1)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 채용시험 응시자에 한함)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동 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40퍼센트 이상 득점 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
- 2)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붙임8]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가산 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OM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로서 가산특전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7

유의사항

-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2)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 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응시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4)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5)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6)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장에는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7) 응시자는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입실하고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8)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053-350-4011)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시험정보란과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http://119.daegu.go.kr>) 공지사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야		내 용
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 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 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야		내 용
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 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2

선택 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제46조의2제1항 관련)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붙임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p>악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근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붙임5】와 같습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론(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e-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1) :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 헤로인(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 메타돈(methadone)
- ▶ 모르핀(morphine)
- ▶ 옥시코돈(oxycodone)
- ▶ 옥시몰폰(oxymorphone)
- ▶ 펜타조신(pentazocine)
- ▶ 페티딘(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6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취다리아병·트리빠노썸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 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구급분야 경력인정범위

(또는 간호업무)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년 이상 응급의료 업무 또는 간호업무에 종사한 근무 경력의 인정범위

-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 간호업무 : 상병자나 해산부의 영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1.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6.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양호교사로 근무한 경력

7.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8.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업무로 근무한 경력(구체적 복무 확인서 필요)

9.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p>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p> <p>- 기술사 : ,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p> <p>-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p> <p>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p> <p>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p> <p>4. 의사, 변호사</p> <p>5. 소방시설관리사</p>	<p>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p> <p>-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p> <p>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p> <p>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p> <p>4. 소방안전교육사</p>	<p>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p> <p>-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p> <p>-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구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p> <p>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p> <p>3.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p> <p>4. 응급구조사(2급)</p>
사무관리		컴퓨터 활용능력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중직무분야」 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